

# 필리핀 은행법 개정 관련 조사

## 필리핀 금융산업 시장 개방

### - 외국계 은행의 지분보유 한도 상향 및 추가 시장진출 허용 -

(2014. 7. 31)

마닐라사무소

#### 1 Republic Act no. 10641

- (공식 명칭) 필리핀 내 외국은행의 진입 전면 허용 법률  
(An Act Allowing the Full Entry of Foreign Banks in the Philippines)
  - \* ‘Republic Act no. 7721 ; 필리핀 내 외국은행의 진출 및 활동 영역 완화를 위한 법률’의 개정 법률
  
- (발 효) 필리핀 대통령이 2014. 7. 15일(화) 서명하였으며, 15일 후인 **2014. 7. 30일부터** 발효
  
- 주요내용 요약
  - \* 이전 법률의 내용은 괄호 안에 표시
  
  - (진입 방식) 필리핀 통화위원회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통해 외국은행의 필리핀 활동 허가
    - i) 현존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최대 **100%(60%)** 인수
    - ii) 필리핀 법인 인가를 받은 새 은행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최대 **100%(60%)** 투자
    - iii) 은행업무 전 권한을 가진 은행 지점 설립
  
  - (승인 지침) 이미 설립된 평판 좋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외국 은행만 진입 가능하며 본국 정부 소유 은행 또는 상장회사 일 것을 조건으로 함(외국은행 중 전 세계 상위 150위 이내의 은행이나, 본국 상위 5위 은행)

통화위원회는, (항상) 전체 은행 시스템의 자원 또는 자본의 최소 60%를 (최소한) 필리핀 사람이 과반수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이 소유하도록 보장하며 국익에 따라 필요시 해외 은행의 출입 중단 가능

- (자본 요건) 지점 설립이 허가되는 외국은행은 동일 범주 (category)의 국내은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본 이상 만큼의 자본 유지(필리핀 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은행은 2억 1천만 페소 상당의 US 달러 이상의 자본 유지 필요)
- (지점 특혜) 외국은행은 통화위원회의 승인 후 지점을 5개(3개) 까지 (지정된 장소에) 설립 가능(이때, 하나의 지점당 3천 5백만 페소 상당의 US 달러를 자본으로 유지). 6개 이상은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.
- (본사 보증) 외국은행의 본사는 필리핀 지점의 부채를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(변동사항 없음)
- (동등한 대우) 외국은행은 같은 범주의 필리핀 국내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며, 같은 혜택을 누리고, 또한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음(동일차주한도 포함). 외국은행 지점의 동일차주 한도는 국내은행에 맞춰 조정
- (담보권 행사) 필리핀 내 은행영업이 허용된 외국은행은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공매처분에 참가하여 저당물을 5년 이내로 소유 가능. 단, 5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필리핀인에게 저당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함.

- (임시조항) 본 법안 발효시 이미 필리핀에서 현재 영업 중인 외국은행은 기존 지점 설립에 관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발효시부터 장소 지정에 관한 제한은 없어짐(처음 3곳은 자율적으로 지정, 나머지 3곳은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통화위원회가 지정)
- (다른 은행법 적용) Republic Act no. 7653 New Central Bank, Republic Act no. 8791 The General Banking Law of 2000, Republic Act no. 337 General Banking은 본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 한 은행에 적용됨.
- (규칙 제정 권한) 통화위원회는 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정 지정 가능(필리핀 상하원의 은행위원회 의장과 협의 후)
- (외국은행 수 제한) 총 10개의 외국은행만이 진입이 허가되었음. 최초 6개는 중앙은행 통화위원회의 승인, 이후 4개는 대통령의 승인 필요(동 조항 삭제)

**<신/구 조문 대비표>**

|                 | <b>RA 7721 (개정 전)</b>  | <b>RA 10641 (개정 후)</b>   |
|-----------------|--|--|
| <b>진입 방식</b>    | i) 현존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최대 60% 인수, 매입, 및 소유<br>ii) 필리핀 법인 인가를 받은 새 은행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최대 60% 투자<br>iii) 은행업무 전 권한을 가진 은행 지점 설립                  | i) 현존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최대 <b>100%</b> 인수, 매입, 및 소유<br>ii) 필리핀 법인 인가를 받은 새 은행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최대 <b>100%</b> 투자<br>iii) 좌 동   |
| <b>승인 지침</b>    | i) 외국은행 중 전 세계 상위 150위 이내의 은행이나, 본국 상위 5위 은행만 진입 가능<br>ii) 통화위원회는, 항상 전체 은행 시스템의 자원 또는 자본의 70%를 최소한 필리핀인이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이 소유하도록 보장 | i) 이미 설립된 평판 좋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외국은행만 진입 가능하며 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닌 이상 상장회사이어야 함<br>ii) 통화위원회는, 전체 은행 시스템의 자원 또는 자본의 최소 <b>60%</b> 를 필리핀인이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이 소유하도록 보장하며 국익에 따라 필요시 해외 은행의 출입 중단 가능 |
| <b>자본 자격 요건</b> | 필리핀 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은행은 2억 1천만 페소 상당의 US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지해야 함.<br>외국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  | 지점 설립이 허가되는 외국은행은 같은 범주의 국내은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본 이상만큼의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, 이 자본은 필리핀으로 송금 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야 함   |
| <b>지점 특혜</b>    | 외국은행은 통화위원회의 승인 후 지점을 3개까지 지정된 장소에 설립 가능. 이때, 하나의 지점 당 3천 5백만 페소 상당의 US 달러를 자본금으로 유지. 지점은 최대 6곳 까지 설립 가능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은행은 통화위원회의 승인 후 지점을 <b>5개</b> 까지 설립 가능. 6개째부터는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.<br>필리핀에서 법인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 자회사의 지점 특혜는, 같은 범주의 국내은행이 갖는 특혜와 동일  |
| <b>본사 보증</b>    | 외국은행의 본사는 필리핀 지점의 부채를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 (변동사항 없음)  | 부채를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  |

|  |  |   |
|--|--|---|
| <p>동등한<br/>대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외국은행은 같은 범주의 필리핀 국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며, 같은 혜택을 누리고, 또한 같은 규제 적용을 받음. 이에 동일차주한도 포함.<br/>필리핀의 상장회사이거나 최소 10년 이상 된 회사는 국내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최대 60% 인수, 매입, 및 소유할 권리를 가짐</p> | <p>외국은행은 같은 범주의 필리핀 국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며, 같은 혜택을 누리고, 또한 같은 규제 적용을 받음. 외국은행 지점의 동일차주한도는 국내 은행에 맞춰 조정</p>  |
| <p>담보권<br/>행사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(신설)</p>  | <p>필리핀 내 은행 영업이 허용된 외국 은행은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공매처분 참가하여 저당물 5년 이내로 소유 가능. 이 기간 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필리핀인에게 저당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임시<br/>조항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본 법안 발효 시 이미 필리핀에서 현재 영업 중인 외국은행은 기존 지점 6곳 설립에 관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처음 3곳은 자율적으로 지정, 나머지 3곳은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통화위원회가 지정</p>   | <p>본 법안 발효 시 이미 필리핀에서 현재 영업 중인 외국은행은 기존 지점 설립에 관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발효시 부터 장소 지정에 관한 제한은 없어 짐</p>   |
| <p>다른<br/>은행<br/>법<br/>적용<br/>가능<br/>성</p> | <p>Republic Act no. 337 General Banking 법안의 조항은, 본 법안의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은행에 적용됨</p>  | <p>Republic Act no. 7653 New Central Bank 법안의 조항과 Republic Act no. 8791 The General Banking Law of 2000 법안의 조항은, 본 법안의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은행에 적용됨</p> |
| <p>규칙<br/>제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통화위원회는 필리핀 상하원의 은행 위원회의 의장과 협의 후, 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정 지정 가능</p>  | <p>통화위원회는 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정 지정 가능</p>  |
| <p>외국<br/>은행<br/>수<br/>제한</p>              | <p>은행업무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은행 지점을 설립해서 필리핀에 들어오는 경우, 총 10개의 외국은행만이 진입이 허가되었음. 그 중 4개는 통화위원회의 추천받아 허가</p>   | <p>(삭 제)</p>  |

## 2

## 은행법 개정안의 의의

- 아세안 은행통합체계(ASEAN Banking Integration Framework)를 2020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로서 아세안 금융 통합을 위한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. 아세안 지역의 경제와 금융의 통합은 은행 부문의 성장과 확장의 기회
- 이 통합 체계에서 Qualified ASEAN Banks(QAB)의 자격을 획득하면 ASEAN 관할구역에서 그 나라의 국내은행과 대등한 조건에서 영업 가능
- 이는 또한 2015년 출범될 아세안경제공동체(AEC, Asean Economic Community) 출범에 따른 역내 금융자유화에 대응하는 취지로,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코자 신속한 법안 개정 추진
- 금융업계에 외국은행의 참여가 늘어나면 필리핀의 금융 자원도 확대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. 또한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경제의 산업과 무역의 성장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직업 창출에도 기여
- 금융업계에 외국은행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나 은행 자원은 필리핀 내국인이 소유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으며 국익에 따라 외국은행의 진입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
- 본 법률은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 예상
- 필리핀 금융업계의 전진으로 인식되며 은행 간의 경쟁으로 은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증가 또한 기대